

## 언론자유와 시민의 권리

이혜복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중재위원

우리 언론은 6·29 민주화선언과 제 6 공화국의 출범으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언론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언론사 설립요건이 완화되어 언론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 6 공화국 출범 당시를 기점으로 비교해볼 때 일간지가 32 개에서 66 개 지로 주간지는 201 종에서 568 종으로, 월간지는 1,204 종에서 1,820 종으로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989. 4. 기준).

이러한 언론사의 증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언론사들이 특색 있는 지면,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언론마다 제구실을 해준다면 언론사의 수가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가 난립돼 만의 하나 상업주의로 기울어 과다 경쟁을 일삼아 졸속, 과장, 왜곡, 선정적인 보도로 치달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형언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언론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주선진국들에서도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을 언론에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고 선진국의 권위 있는 언론사 일수록 스스로 엄격한 윤리규정을 제정, 자율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언론보도활동으로 인한 침해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리나라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한 유관단체들이 있고, 「신문윤리위강령」, 「보도기준」, 「신문부고윤리강령실천이요강」, 「방송심의규정」 등 자율규제를 위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율규제만 가지고서는 미흡한 점이 있고 각종 언론침해사건을 일일이 법정에서 가리기에는 절차상,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소모가 극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당사자의 중간에서서 공평무사하게 중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전치제도로 언론중재제도를 마련했으며 그 역할이 점차 활성화돼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서구의 신문평의회, 일본의 신문협회와는 달리 언론침해에 대한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까지는 언론침해를 받은 일반시민이 언론기관에 불만을 호소해도 정정보도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예가 허다했으나 언론중재제도의 설치로 막강한 언론사에 대해 피해시민의 약한 입장이 크게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익기관인 언론사 역시 보도관계로 일반시민과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결코 명예롭지 못한 일인 만큼 비공개로 중재위원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규정, 중재제도는 언론사나 피해를 입은 시민 쌍방,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로 활용, 발전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위원회는 1989년 9월말까지 총 513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언론의 보도로 인해 명예나 신용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사실은 신속, 정확,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언론이 치열한 취재 경쟁속에서

부정확한 내용, 일방적인 내용을 충분히 여과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침해매체별로 보면 대중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시청취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침해 건수가 가장 많아 일반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 종사자들의 자성과 각성이 요구된다.

중재신청건수는 지난 1988년까지는 미약했으나 198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 1989년 들어와서는 격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1)언론사의 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취재 경쟁이 치열해져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2)일반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침해 받은 사실에 대해 구제방도를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3)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에 따른 구제를 위하여 중재 신청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언론보도내용을 자체 심의하여 침해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발행인에게 시정권이고도 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주로 명예 및 사생활에 관한 침해 사항,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경시한 보도내용, 미성년피의자의 신원공표,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내용 등의 구체적 사례를 지적,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명예 및 사생활 침해 보도로 1981년 이후 1988년까지 시정권고 된 건수가 25건이던 것이 1989년 한 해에만 61건으로 크게 늘어 났고, 미성년자의 신원공표로 시정권고 된 사례도 1981년 이후 1988년까지 3건에 불과했던 것이 1989년 들어 7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침해사례로 시정권이고 대상이 된 언론매체 중 일간지의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지방지의 경우 미성년피의자의 신원공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신원공표 등 거의 비슷한 유형의 기사를 되풀이 무신경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설치된 지 9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제도는 점차 활성화, 정착화 돼 가고 있어 언론침해를 받은 일반 시민과 피해를 준 언론사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굳이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행 언론중재제도가 서구선진국의 신문평의회와 같이 (1)언론출판의 자유의 옹호, (2)윤리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3)독자로부터의 취재, 기사에 대한 불만처리, (4)신문과 신문 사이, 신문과 뉴스원 사이의 문제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광범하고도 강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법의 개정 등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중재제도는 어디까지나 중재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의 사이에서 공평무사하게 중재역할을 담당할 뿐 어떤 강제성도 떨 수 없다는 데서 쌍방(언론사와 피해자)의 의견이 조종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다.

특히 시정권고의 경우 해당 언론사에 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내도 시정권고 대상이 될 비슷한 보도사례가 거듭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 봐서 좀 더 효과적인 규정 (예컨대 시정권고 된 사실도 해당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든 언론창달을 위해서는 언론사나 언론에 의해 침해 당한 시민 모두가 언론중재제도의 설치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자세정립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보성전문 상과
-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 역임
-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